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, 그 연령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의 ‘15세 이상 29세 이하’에서 ‘15세 이상 34세 이하’로 조정하고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1호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은 정)